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10. 2.

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9월 13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 제출

다. 회부일자: 2024년 9월 23일

라. 상정일자: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9. 30.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김형성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별표에 기재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가.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(안 별표 5)

나. 법률명 정비

(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→ 「입양특례법」 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, 법률명을 현행과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별표5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→3일로 확대함.

- 안 별표5 비고 제2호에서는 인용하고 있는 법을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→ 「입양특례법」 으로 정비함.

○ 검토 결과

-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,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'24년 3월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「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을 발표함.
- 이후 후속조치 등을 위하여 4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과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, '24년 7월 2일 개정안이 시행된 바 있음.
- 따라서 본 안건은 상위법 별표1 중 “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경조사 휴가일수” 를 1일→3일로 확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98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9. .  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별표에 기재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(안 별표 5)
- 나. 법률명 정비(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→ 「입양특례법」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4. 8. 8.~8. 28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#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일수란 중 “1”을 “3”으로 하고,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“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”를 “「입양특례법」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